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5. 3. 24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5년 3월 16일

회부일자 : 1995년 3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2 회 임시회

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5. 3. 24.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경주)

가. 제안이유

-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 정원, 직렬, 기능조정권한 삭제
- 수산자원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 및 위반자 조치
-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
-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병수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와 시·군간에
있어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추진의
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- 1. 지방과소관 사무중 시·군의 정원조정, 이관, 직렬조정, 기능조정 등의
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
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에관련한 일련번호를 조정하려는
것이며
- 2. 축산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보전지구에 관한 권한으로 수산
자원 보전지구관리, 보전지구내 행위제한, 오염원 및 환경오염도 조사,
보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소관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
- 3. 도시개발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
인가,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, 재개발사업 시행자의

지정신청 및 지도감독 등의 소관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써
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추진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
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
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향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.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. 신구조문 대비표